

# 대학원 임상영양사과정 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 임상영양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①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은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인 대학원을 의미한다.

② 임상영양사과정은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임상영양사 양성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.

③ 전공전임교수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임교수로서,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계획 및 운영하며, 학사지도, 학생평가, 예산 및 인력관리 등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전반을 책임, 관리하는 교수를 의미한다.

④ 실습지도겸임교수는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실습협약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상영양사로서 임상영양실습교과목에 적절한 실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.

⑤ 실습협약기관은 임상영양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해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을 의미한다.

**제3조(교육기관의 정원 및 지정일)** 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생 정원은 5명이다.

②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최초지정일은 2012년 8월 27일이다.

**제4조(교육목표)**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목표는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임상영양사를 양성하고, 사랑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윤리적 직업인을 양성하며, 협동적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통한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5조(교육과정)** ① 교육과정은 최소 4학기이며, 과정입학등록 이후 과정수료까지 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한다.

② 교육과정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제시한 임상영양사 표준교육과정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.

**제6조(이수과목)** ① 본 교육과정의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 별표 3 따름)(개정 2021. 9. 27.)

구분	과목명	학점	
이론과목	필수	고급영양이론	3
	필수	병태생리학	3
	필수	임상영양치료(1, 2)	6
	필수	고급영양상담 및 교육	3
	필수	임상영양연구	3
실습과목	필수	임상영양실습	8(480 시간)
계		26	

② 학기당 학점신청은 9학점 이하로 한다.

**제7조(전공전임교수)** ① 학생 정원 10명당 1명 이상의 전공전임교수를 임명하여야 하며, 전공전임교수가 2명 이상인 경우, 1명을 과정책임교수로 정한다.

② 전공전임교수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임교수 중 임명한다.

**제8조(실습지도겸임교수)** ① 제6조의 임상영양실습 과목의 교육을 위해 학생 정원 5명당 1

명 이상의 실습지도겸임교수를 둔다

② 실습지도겸임교수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, 임상영양사 국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③ 임상영양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에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실습지도겸임교수를 임명한다.

**제9조(실습협약기관)** ① 실습협약기관은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는 보건소, 보건진소,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기관 차원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.

② 실습협약기관은 실습목표에 맞게 충분한 임상실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, 조직, 임상영양치료활동, 임상영양사 수 등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10조(임상영양실습)** ① 임상영양실습은 8학점, 48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실습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한다.

③ 최소 240시간 이상(4학점 이상)은 반드시 한국영양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과정입학기준)**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입학기준은 영양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, 그 외 기준은 「대학원 학칙」,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 다만,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교육개시년도의 영양사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.

**제12조(입학전형)** 전형자료는 면접고사, 구술고사, 대학 및 대학원 성적, 면학계획서를 활용한다.

**제13조(학위수여 자격)**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학위수여기준의 기본 원칙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37조를 따른다.

**제14조(교육과정 수료)** ① 대학원의 수료기준 및 졸업기준과는 다른 의미로서,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법적기준에 따른 최소 기준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의미한다.

② 교육과정 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.

1.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입학 이후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

2. 제6조제1항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

3. 취득한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

③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수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,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다. 다만, 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은 학위수여증서, 졸업증서와는 다른 종류의 과정수료에 대한 확인증이다.

**제15조(제적)**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학기별 평점평균이 연속 두 학기 각 75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을 시킬 수 있다.

**제16조(평가)** ① 전공전임교수 책임 하에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, 외부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위탁기관인

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. 다만, 외부평가 시에는 책정된 평가수수료경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③ 교육의 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, 자체평가위원회는 식품영양학과장 및 학과 내 교과목을 담당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17조(운영현황 보고)** 매 학기마다 운영현황을 보건복지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 보고한다.

**제18조(기타)**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

## 부 칙

1.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'규정류'로 제정되었음

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개정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